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만하역요금 협의체에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등 추가 〉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18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항만하역요금 협의체에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등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13.
3. 회 부 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항만하역요금 협의체에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등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에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⑤ (생략)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u>부두운영회사</u>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 ----- ----- ----- <u>부두운영회사,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u> 등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항만하역사업이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의 운송 등의 업무 수행 시 받아야 하는 운임과
요금¹⁾은 현행법 제10조²⁾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에서 항만하역사업 관련 규정]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艇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한다)에서
부선 또는 범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항만 또는 지정구간에서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선(曳引船)으로 끌고 항해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나.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6.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창고 또는 하역장[수면
(水面) 목재저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들여놓는 행위

7.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8.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하역장에서 싣거나 내리거나 보관하는 행위

9. 항만에서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화물을 부선에 싣거나 부선으로부터 내리는 행위

10.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11.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12.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나,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로부터 내가는 행위

13. 항만에서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서 싣거나 내리
거나 보관하는 행위

1) ○ 운임: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차량 등 동력을 이용한 운송에 대한 비용
○ 요금: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과정에서 운송 외 하역 작업에 대한 비용(다만, 현장에서는
‘요금’에 ‘운임’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지칭)

2)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또한, 현행법 제10조제6항에서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³⁾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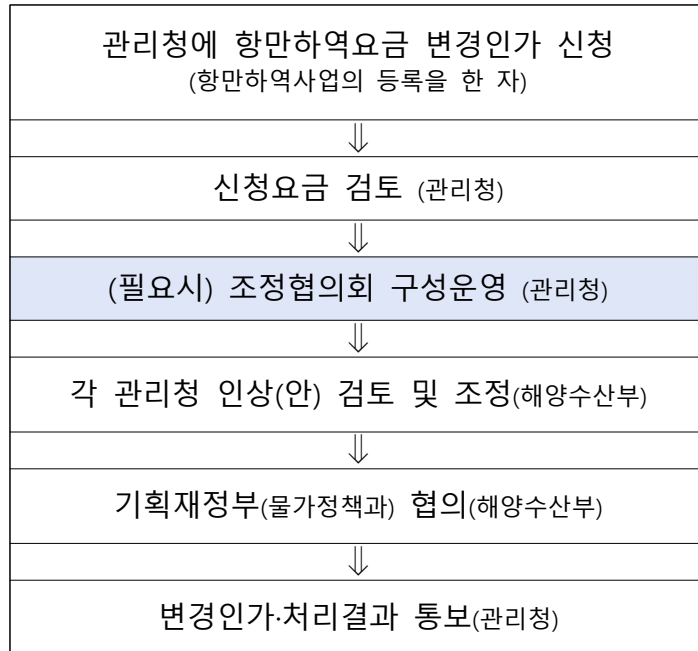
- 참고로, 협의체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항만하역요금의 인가권자는 항만관리청인 지방해수청 또는 지자체이나,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별로 선사, 화주, 항만근로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워 해양수산부 본부(항만운영과)가 매년 ‘항만하역요금 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음.

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2. 그 밖에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전용 사용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4)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운임 및 요금)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항만하역요금 부과 절차]



- 이후 해양수산부는 「물가안정법」 제4조5)에 근거해서 각 항만 관리청 인상(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후 도출된 최종 인상률을 각 항만관리청, 이해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제안이유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자동화물비(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의 지난 5개년 인가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는 설명임.

[최근 5개년 자동화물비 인가금액]

(톤당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승용차	1,656	1,682	1,743	1,787	1,833
화물차	1,270	1,290	1,336	2,358	2,419
중장비 화물	4,639	4,713	4,883	5,005	5,135

※해양수산부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선박 이용객이 차도선((車渡船), 차량과 승객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한 종류)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차량 또는 화물 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이용객들에게 도선료⁶⁾ 및 자동화물비가 부과되고 있는데,

자동화물비는 페리나 차도선에 자가용 또는 화물차량 등을 싣거나 내릴 때 항만하역사업자의 직원이 차주를 대신하여 차량을 싣고 내려주거나 차량 유도, 부두 간 깔판 설치 등의 노무 제공에 따른 서비스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의 차도선의 경우 자가용 또는 화물차량을 싣거나 내릴 때 항만하역사업자가 대신하여 차량을 싣고 내리지 않고, 차주가 직접 자신의 차량을 싣고 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동화물비의 필요성과 적정요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과거 차도선이 없을 때에는 항만근로자가 섬 주민의 화물을 개별로 처리·선적하여 이에 따른 서비스 대가인 자동화물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섬 주민 화물의 대부분은 택배 차량에 적재된 후 택배기사가 직접 차도선에 승선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동화물비의 재검토(개선 또는 폐지) 또는 자동화물비의 부과 근거 구체화

6) **도선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은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과정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및 투명한 정보공개 절차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⁷⁾한 바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표준운임·요금 산출 등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에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외에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재 관리청⁸⁾이 인가하고 있는 항만하역요금 중 일부가 도서지역 주민 등 선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산출 내역에 대한 공개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서지역 주민이 항만하역요금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운임·요금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협의체 참여대상으로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이외에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체 참여대상의 특징이 어려워 협의체 구성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여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7)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제2002-389호, 2022년 5월16일)

8)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관리청”이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섬 도서 하역서비스의 경우 일반 무역항과 달리 ‘카페리 자동화물’이 발생하며 이 때 섬주민 등 이용자단체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에 공감하나, ‘도서지역 주민협의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항만하역과 관계없는 주민협의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항만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